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11-52
----------	-------

제출년월일 : 2011. 8.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폐지이유

「지방공무원법」 개정(2011.5.23)으로 고용직공무원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법」 개정(2011.5.23)에 따른 고용직공무원 폐지

나. 상위법 개정으로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를 폐지함.

3. 폐지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제3항제4호

나.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 폐지 통보
(서울특별시 인사과-106374, 2011.5.23)

4. 조 례 안 : 따로 붙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6. 기타사항

가.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나.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공고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11-550호 (공고 심사필 제624호)

· 기간 : 2011.07.14 ~ 2011.08.03 (제출된 의견 없음)

(2) 제16회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의결, 2011.8.11)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